

「2026년 경북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통합」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가상융합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경북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통합 기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경북 특화산업과 가상융합기술의 결합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사업화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활성화
- (지원사업) 가상융합관련 서비스 제작 및 고도화, 기업 맞춤형 교육
-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 ~ 2026년 11월
- (지원내용)

구분	지원분야	지원금 ¹⁾	선정규모 ²⁾
지원분야 및 선정규모	① 서비스 개발 및 실증지원	①-1. 고도화	최대 50,000천원 내외(기업부담금 20%)
		①-2. 신규	최대 30,000천원 내외(기업부담금 20%)
목적 및 지원방향	서비스 개발 및 실증지원	▶경북지역 특화분야(제조, 국방, 영상미디어, 문화관광)의 가상융합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기존 XR (VR, AR, MR) 콘텐츠를 가상융합 서비스(AI 포함)로 전환을 지원 ▶실증인프라 활용 가능한 가상융합 서비스 제작 및 기구축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 ▶경북을 대표하는 다양한 IP를 활용한 가상융합서비스 개발/고도화	
지원대상	공통	▶ (필수) 경북권 소재 중소·중견기업(본사 및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 가상융합 서비스 제작 유망기업 ▶ 기 제작된 XR(VR·AR·MR) 관련 콘텐츠(서비스) 제작 중인 기업	
	서비스 개발 및 실증지원		
유의사항 (서비스 개발지원)	▶ ①-1. 고도화 과제는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및 기타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특화분야 콘텐츠 개발 필수 및 기존 콘텐츠에 대한 고도화 차별성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함 ▶ ①-2. 신규 과제는 지역특화분야 콘텐츠 개발 시 가점 부여		

^{1,2)}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과 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가 경북인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

○ 모집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기타 지원사업 추진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세부사항은 지원제외 기준 참조

○ 지원내용

- (필수) ① 지원기업은 지원금의 20% 이상을 현금 출자, ② 경북 가상융합 산업 혁신센터 보유 장비를 활용한 서비스 실증 필수
-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서비스 개발 및 실증지원) 제작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총사업비의 60%) 및 직접비 지원

사업비 조성 비율(사업비 기준, 예시)					사업기간			
분야	기업지원금	기업부담금	총사업비	협약일 ~ '26. 11.				
지원금+기업부담금	지원 분야별 지원금	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지원금+ 기업부담금					
(예시)								
① 콘텐츠 개발 및 전환	①-1. 고도화	50,000천원	10,000천원			60,000천원		
	①-2. 신규	30,000천원	6,000천원	36,0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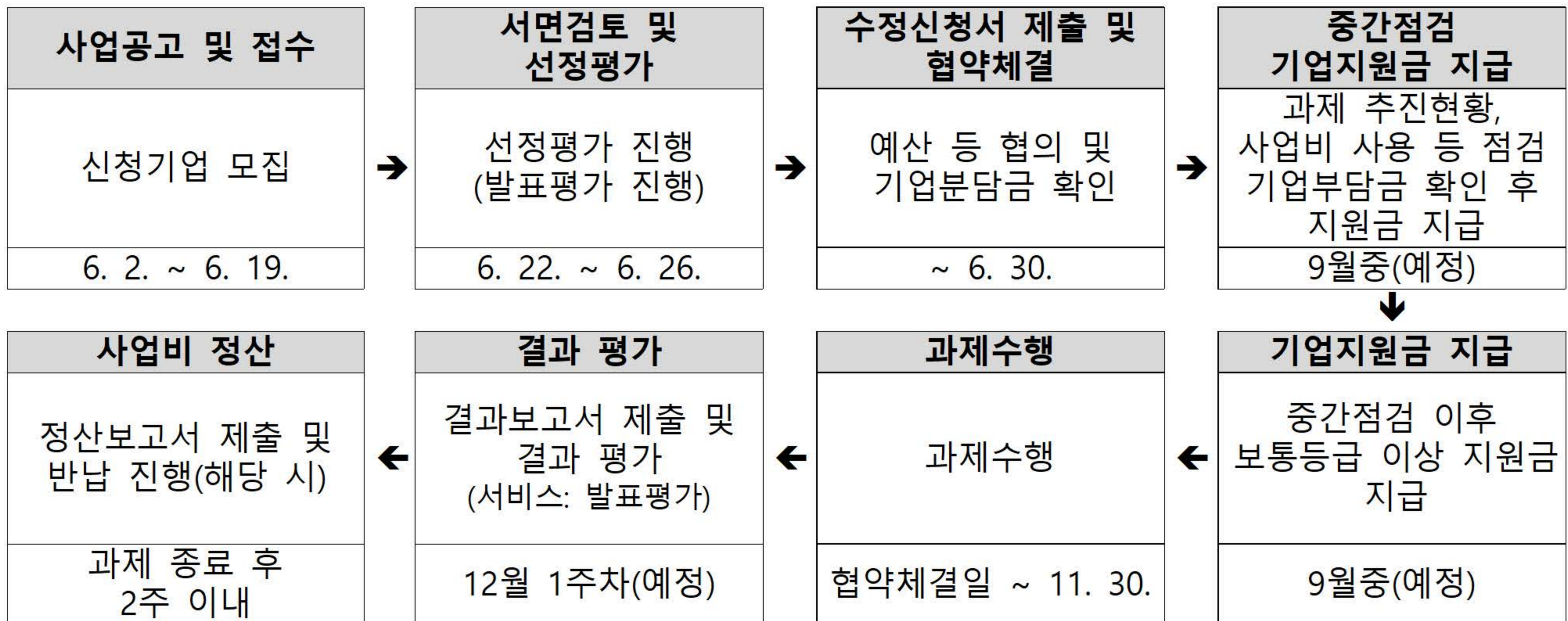
○ 지원항목

- 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기업이 선택하여 구성한 집행항목 및 집행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집행(7. 사업비 산정기준 참고)
- 단, 사업 신청서에 사업비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 시 신청서에 제출한 집행내용으로만 사업비 집행 가능(지원기업 임의로 판단하여 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집행내용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① 서비스 개발 및 실증지원	경북지역 특화분야 가상융합서비스 개발비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R, AR, MR, 콘솔, PC, 모바일 플랫폼 등 가상융합 서비스 ▶ 경북지역특화콘텐츠(SW)의 설계, 개발, 제작 등 ▶ 콘텐츠·서비스 UX·UI 및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등 ▶ 재료구입 및 장비사용(장비 구매 불가) 등 ▶ 성능검증, 데이터 분석 등 ▶ 국내외 규격 인증 획득 등에 필요한 시험·인증 관련 제반비용 등 ▶ 제품·서비스 개선 및 사업성 검토 등을 위한 컨설팅 등 ▶ 기타 콘텐츠 제작·개선에 필요한 제반비용
	인건비 (총사업비 60% 이내)	▶ 가상융합관련 서비스 제작 및 고도화를 위한 내부 인건비
① 서비스 개발 및 실증지원 :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내부 인건비 계상 인정		

○ 추진 일정 및 절차

- 서비스 개발 및 실증지원(고도화 및 신규)



3 선정평가 및 선정

○ 평가 기준(①서비스 개발 및 실증지원)

-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필수서류 제출 여부 및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후 **발표평가(100%)** 진행

- 평가점수 70점 이상 득점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최종 지원기업 선정

* 평가위원회 의견 및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구분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수행기관 (10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 지원기업의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10
	기관 전문성	- 기업 개발력, 협력기업 우수성 및 수출경쟁력	
참여 인력 (10점)	참여 인력 전문성	- 참여 인력의 개발경력(또는 학위) 및 우수성	10
	참여 인력 참여율	- 참여 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참여 인력 확보	- 참여 인력의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	-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10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 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과제기획력 (40점)	과제 이해도	- 목표 시장 및 과제 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20
	기획 독창성	-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	20
과제 내용 (30점)	대중성(상업성)	- 실제 사업모델 및 예상 수익의 적절성	30
	경쟁력	- 진출 시장의 경쟁력 및 인지도	
합계			100

○ 가산점 부여 기준

- ▶ 가산점 부여 방법 : 가점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종평가점수에 1점 가점 부여
- ▶ 가산점 부여 항목(공통)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 ▶ 가산점 부여 범위 : 최종평가점수(100점)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최대 3점까지 인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내용
접수기간	■ 2026. 6. 2.(화) ~ 2026. 6. 19.(금) 18:00시까지
접수처	■ E-Mail 접수(접수증은 접수 담당자의 접수 완료 회신 E-Mail로 같음)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식교부	■ 모든 서식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홈페이지(www.geri.re.kr) 참조 * 홈페이지 상단 → 지원분야 → 기업지원사업안내 → 동 사업공고 선택

5

접수 및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접수 및 문의	신한재 책임	054-460-9056	hjshin@geri.re.kr

6

기타사항 및 지원제외 기준

유의사항	<p>①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출서류가 허위·중복으로 판명 나는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지원 여부로 판단(고도화 분야는 제외)</p> <p>② 지원 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p> <p>③ 사업 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원칙</p> <p>④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 불가</p> <p>⑤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p> <p>⑥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주관기관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하며</p> <p>⑦ 접수 후,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p> <p>⑧ 지원항목별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등 환급 가능 금액은 제외됨</p> <p>⑨ 사업 신청서에 표기된 첨부서류 목록 확인 필수</p> <p>⑩ 세부 일정은 신청기업 대상으로 추후 별도 공지 예정</p> <p>⑪ 심사 및 협약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p>
------	---

○ 관련 규정 및 근거

< 관련 규정 >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이외의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령 및 규정 준용

○ 지원제외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공통) 업체가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제외하여 작성, 전담기관(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 ★ 사업비 산정 관련 규정 및 근거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기준
- ★ 사업비 구성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전문(※별첨)
 - [별표1]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기준 참조
 - 선정 후 과제수행 시 증빙자료 : [별표2] 정산 시 제출서류 참조

비목	세목	적용대상	집행방법	비고				
인건비	보수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 ○ 인건비 계상 기간 : '26.5. ~ '24.11.(7개월)	계좌이체	총사업비 60% 이내 인정				
	상용임금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좌이체					
운영비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필수) - 정산위탁 수수료(필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사업비 규모</th> <th>표준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 5천만원 미만</td> <td>600천원</td> </tr> </tbody> </table>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 5천만원 미만	600천원	카드/계좌이체	총사업비 10% 이내 인정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 5천만원 미만	600천원						
	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국내결제 및 사업기간 내 비용만 인정(해외결제 불가)	카드/계좌이체	총사업비 10% 이내 인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계좌이체	총사업비 10% 이내 인정					
일반용역비	○ 사업수행의 일부를 외부기업에게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사운드, 그래픽, 번역 등 외부 위탁(외주 제작) 용역비 ○ 결과물과 연동된 어트랙션 및 기기 제작 위탁 용역비 등	계좌이체	총사업비 50% 이내 인정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인당 3만원 이내(식대, 다과 포함)	카드/계좌이체	총사업비 3% 이내 인정				